

퇴직연금가입자교육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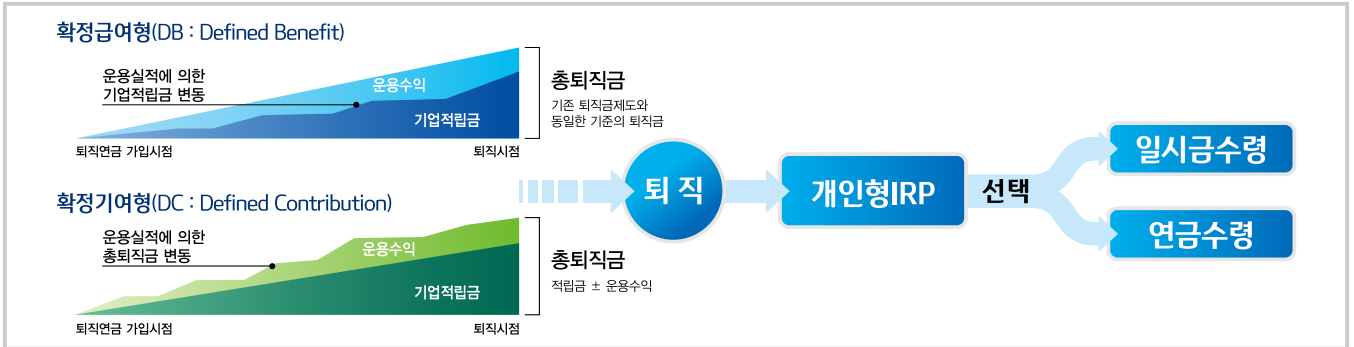
(DC형 · 기업형IRP)



□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생활에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

●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자금을 회사가 직접 운용합니다.

☞ 회사는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직원은 확정된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 DB형에서 발생한 운용손익은 모두 회사에게 귀속 되기 때문에 직원이 받게 되는 퇴직금은 변동되지 않으며, 직원은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 기업형IRP

●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자금을 직원이 운용합니다.

☞ 회사는 직원별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합니다.
적립된 자금은 직원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직원의 퇴직금은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DC형 / 기업형IRP에서 발생한 운용손익은 모두 직원에게 귀속 되기 때문에 직원이 받게 되는 퇴직금은 운용실적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DC형 / 기업형IRP의 퇴직금 = 회사 납입원금 ± 운용성과]

● 노후 대비를 위해 DC형에 설정한 연간납입한도 내에서 본인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 '연간납입한도'란 개인별로 최대 1,800만원(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납입한도를 합산)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과도한 연간납입한도 설정은 다른 금융상품 가입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간납입한도 변경절차

- 인터넷뱅킹 : 로그인 → 퇴직연금 → 신규/부담금/입금/자동이체 → 연간납입한도(DC/IRP) 조회 / 등록
- 영업점방문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IBK기업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연간납입한도 조회 및 변경 가능

● 가입자가 본인자금을 추가로 DC형에 적립한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형DC)

●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에 표준규약과 표준계약을 작성 및 신고하여 둘 이상의 회사가 표준화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표준규약에는 DC제도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고 추가로 가입 대상 사업, 제도명칭, 제도 탈퇴 사유 및 절차,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표준형DC 제도에서의 퇴직금 수준과 운용방법은 모두 DC제도와 동일합니다.

4.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이 입금되는 통장입니다.

☞ 퇴직연금제도(DB/DC/기업형IRP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및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개인형IRP에 의무적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 노후 대비를 위해 개인형IRP에 설정한 연간납입한도 내에서 본인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 '연간납입한도'란 개인별로 최대 1,800만원(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납입한도를 합산)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과도한 연간납입한도 설정은 다른 금융상품 가입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간납입한도 변경절차

- 인터넷뱅킹 : 로그인 → 퇴직연금 → 신규/부담금/입금/자동이체 → 연간납입한도(DC/IRP) 조회 / 등록
- 영업점방문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IBK기업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연간납입한도 조회 및 변경 가능

● 가입자가 본인자금을 추가로 개인형IRP에 적립한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형IRP에 입금된 적립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의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입금된 퇴직금은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만 55세 이후부터는 연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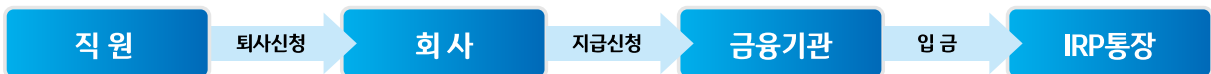
□ 퇴직연금 지급절차(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으로의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연금제도(DB/DC/기업형IRP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및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개인형IRP에 의무적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입출식 계좌로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 예외사유

- ① 만 55세 이상 퇴직자 ② 퇴직급여액이 3백만원 이하 ③ 퇴직과 동시에 출국하는 외국인 ④ 다른 법률에서 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단,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개인형IRP로 입금해야 함) ⑤ 사망에 의한 당연퇴직

● 퇴직금 지급 절차



① 회사에 퇴직금 신청 (개인형IRP개설 후 통장사본제출)

② 퇴직급여 산정 후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지급신청

③ 신청서류 접수 후 세전 퇴직금을 개인형IRP로 입금

④ 퇴직금 입금 후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선택가능

☞ 퇴직 시 가입자는 수령받을 IRP 개설정보, 법정 외 퇴직금 보유 시 이전여부, IRP이전 시 운용상품(비율 포함)과 과세이연 처리에 필요한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과세이연명세서) 등을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지급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퇴직연금 고객센터 1588-25888(532)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소요기간

: 운용중인 상품별 매도소요기간에 따라 최소 2영업일 ~ 최대 15영업일

● 제도별 지급유형 및 수급요건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개인형IRP
지급유형	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요건	연금	· 개인형IRP 이전 후 수령		
	일시금	① 만 55세 이상 ② 가입기간 5년 이상 ^{주1)} ③ 연금수령기간 ^{주2)} 10년 이상 ④ 연간 연금수령한도 ^{주3)} 내 인출 · 연금수급 요건 미충족 시 또는 일시금 수급을 원한 경우		

주1) 퇴직금이 포함된 개인형IRP는 가입기간 5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금 수령 가능

주2) 2013년 3월 1일 이전 연금계좌에 최초 가입한 경우는 최소 5년 이상

주3) 연금수령한도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적립금 평가총액/(11-연금수령연차)×120%

□ 퇴직연금 계약이전 절차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를 변경하거나 추가 할 수 있고,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연금을 기존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것을 계약이전이라고 합니다.



① 지방관할노동관서에 계약변경신고를 합니다.

② 새로운 금융회사와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③ 새로운 금융회사에 계약이전 신청을 합니다. (기존 금융회사에서도 신청 가능)

④ 계약이전 완료 후, 새로운 금융회사가 제도를 계속 운영합니다.

□ 담보대출/중도인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하여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중도인출 또는 담보대출 가능한 법정사유

1. 무주택자인 가입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 (단, DC형/기업형RP의 경우 1개 근무지에서 1회에 한함)
3.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가입자 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 부담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6. 자연재난·사회적재난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7.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 받은 가입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

※ DC 및 IRP 가입자는 법정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도인출 가능 (DB는 중도인출 불가)
 ※ 담보대출만 가능한 사유 : ① 가입자가 본인(배우자 포함)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 부담
 ② 사업주의 휴업으로 가입자의 임금 감소
 ※ 담보대출의 경우 당행은 현재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가능한도

☞ 중도인출 : 적립금의 100% / 담보대출 : 적립금의 50%

□ 퇴직연금의 세금

퇴직연금의 세금은 소득원천 및 퇴직금 수령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 됩니다.

소득원천		연금적립	연금 외 수령(일시금) ^{주2)}	연금 수령
퇴직금		· 과세이연 혜택 ^{주1)}	· 퇴직소득세 ·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 X 60~70%) ^{주3)} · 분리과세
운용수익		-	· 기타소득세(16.5%) ·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가입자 부담금	세액공제 ○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연간 900만원 세액공제 혜택 ※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이하 16.5% / 초과 13.2% 적용	· 비과세	· 사적연금소득 합산 연간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선택 가능
	세액공제 ×			

주1) 개인형RP에 퇴직금을 입금하면 세금이 과세이연 되어 개인형RP에서 퇴직금을 인출하는 시점까지 세금납부시기가 미루어집니다.

주2)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적용하며, 분리과세로 종결합니다.(부득이한 사유: 사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또는 파산, 해외이주 등)

주3)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이하 시 퇴직소득세×70%, 10년 초과 시 퇴직소득세×60%로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의 중단 또는 폐지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

● 퇴직연금제도 폐지

☞ 퇴직연금제도는 노사의 합의하에 폐지가 가능하며, 적립금은 가입 직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퇴직연금제도 중단

☞ 기업이 일시적인 재정압박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계약한 금융기관이 등록 취소된 경우에 퇴직연금제도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중단된 이후에도 근로자 적립금 입금, 급여지급, 적립금 운용, 운용현황통지 및 가입자 교육 등은 계속 수행되어야 합니다.

● 회사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퇴직연금지급신청이 어려운 경우

☞ 기업의 도산, 폐업 등으로 사업주와 연락이 불가능하여 퇴직연금 지급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퇴직연금 가입사실확인	② 퇴직연금 지급신청	③ 퇴직금 수령
영업점 방문 또는 통합연금포털 조회*	영업점 방문 지급신청	IRP계좌 개설 후 퇴직금 수령

* 퇴직연금 가입금융기관을 모르는 경우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가능(100lifeplan.fss.or.kr)

□ 퇴직연금제도 안정적 운용전략

● 적립금의 안정적 투자 원칙

- ☞ 1. 장기투자 : 시장 변동에 대한 위험을 줄여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 ☞ 2. 분산투자 :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한 자산의 가격변화에 대한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3. 적립식투자 :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동안 납입 시, 투자기간 중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운용상품의 종류

구분	원리금보장형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상품종류	정기예금 (만기 3개월/6개월/1~5년), 보험사 이율보증형 (만기 1년/2년/3년/5년)	채권형/채권혼합형/주식혼합형/주식형 펀드 TDF, ETF 등
예금자 보호	DC, IRP의 정기예금, 이율보증형 보험상품	X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O	O
상품 수수료	X	일부 상품의 경우 환매수수료 발생
보수	X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등
매도 기준가	X	상품별 기준가 적용일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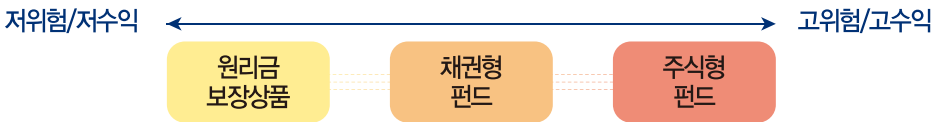
※ 개별 상품의 자세한 사항은 상품(서비스) 약관 및 설명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투자성향 및 운용방법별 수익구조와 투자위험

☞ '투자성향'은 추구하는 기대수익을 얻기 위하여 감내할 수 있는 위험수준을 말합니다.

공격투자형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위험중립형	예 ·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안정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자/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음

☞ 운용방법별 수익구조와 투자위험 :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투자위험(불확실성)이 높아집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 안내

퇴직연금(DC/IRP) 가입자가 운용상품의 만기 도래 시 별도의 상품을 선택하지 않아도 사전에 정해놓은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디폴트옵션의 도입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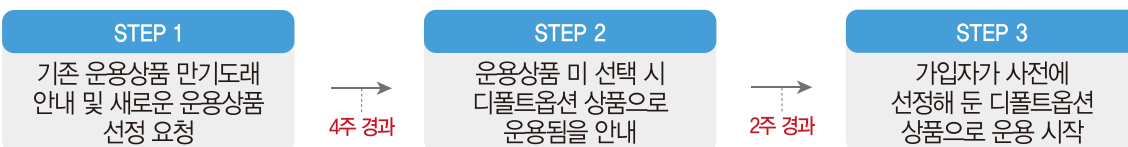
☞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 디폴트옵션의 선택방법

- IBK기업은행** 위험도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된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시
- DC가입기업** 은행이 제시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하여 규약에 반영
- DC가입자(근로자)** 투자자성향 분석 후 디폴트옵션 상품 중 1가지를 선정(영업점, 인터넷, 모바일뱅킹에서 가능)

※ 상품 주요내용은 영업점 또는 인터넷 · 모바일뱅킹에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디폴트옵션의 적용절차



□ 노후설계 및 생애주기별 재무관리의 중요성

● 노후설계의 중요성

☞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후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고 있지만, 연금가입 등 노후준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고 고정지출이 늘어나는 시기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준비가 필요합니다.

●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관리의 중요성

☞ 생애주기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재무목표'를 세우고, 이에 맞는 자산 및 부채관리와 투자자산의 구성을 통해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생애주기 단계별 재무목표 설정

주기단계	미혼기	신혼기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자녀 학령기	자녀 성년기	자녀 독립 및 은퇴기
재무 목표	· 경제적 독립 준비 · 결혼준비	· 새로운 경제 생활 적응 · 주택자금 마련	· 자녀출산 준비자금 · 주택마련자금 · 자녀 양육비	· 자녀교육자금 · 주택마련 또는 확장 자금	· 은퇴준비 · 자녀독립 및 자녀결혼 준비	· 은퇴생활 영위 · 상속준비

□ 사용자 부담금 안내

1. 부담금관련 주요 사항

● 부담금 수준

☞ DC형에 가입한 회사는 매년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에 납입 해야합니다.

● 부담금 납입시기

☞ 매년 1회 이상 / 노사 합의에 따라 규약에서 정한 날짜에 납입해야 합니다.

● 부담금 납입현황 확인

☞ 기업은행 홈페이지 <http://www.ibk.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i-ONE뱅크 App > 전체메뉴 > 퇴직연금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분기별로 발송되는 가입자 운용현황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 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여진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지연이자 이율

☞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 +14일까지 : 10%, 퇴직일 + 14일 이후부터 부담금 납입일까지: 20%



●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 1)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 1번부터 3번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제도 일반 안내

● 수급권의 보호

- ☞ 퇴직연금제도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 예치함으로써, 향후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임금이란?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임금의 정의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DB의 퇴직금과 DC의 회사 적립금은 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금포함 항목	·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
임금 불포함 항목	·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없이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금품,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 체당금 제도란?

-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 금액까지 근로복지공단이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
*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퇴직급여의 수령

1. 퇴직연금제도(DC/기업형RP)에 가입된 근로자는 퇴직 시 해당 적립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 적립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따로 지급한 경우,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지급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금액은 기업으로 반환이 불가^(주1)합니다. (주1).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기업반환 가능
3. 만약 퇴직연금 적립금과 회사에서 따로 지급한 퇴직급여를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라면, 퇴직 시 산출된 퇴직급여 초과 수령분은 기업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퇴직연금 고객센터 ☎ 1588-2588(#53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135호 (2024.01.09) 게시기한 : 2025.01.07 출급번호 : EV860

※ 퇴직연금(DC/IRP)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투자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퇴직연금(DB)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가입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